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247~247p 2·5번 해설 번호 : 02	해설	2번 해설 : 대판 2008.12.11. 2007다69192 5번 해설 : 대판 2013.4.16. 2013다5855	2번 해설 : 대판 2001.9.4. 2001다14108 5번 해설 : 대판 2013.4.26. 2013다5855
251~251p 3·4번 해설 번호 : 06	문제-본문	3번 해설 :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(민법 제387조 제2항). 4번 해설 :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(민법 제387조 제3항).	3번 해설 :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(민법 제387조 제1항). 4번 해설 :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(민법 제387조 제2항).
416~416p 4번 해설 번호 : 12	해설	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. <u>다만, 보수의 지급시기를 특약으로 정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(민법 제686조 제2항).</u>	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<u>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(민법 제687조).</u>
본권 526~526p 12~12줄 심화박스	문제-본문	(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(150만원을 하단 으로 하고,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)	(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(150만원을 상한액 으로 하고,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)
526~526p 박스	문제-본문	상단 :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(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) 하단 :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(150만원을 하단 으로 하고,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)	상단 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(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) 하단 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(150만원을 상한액 으로 하고,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)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